

出願 및 登錄關係 事務取扱 規程



特許廳訓令 第9號

1977. 8. 26

第1條 (目的) 이 規程은 工業所有權에 관한 出願 및 登錄關係의 事務處理基準을 정하여 迅速公正한 事務處理와 그 能率의 向上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適用範圍) 工業所有權에 관한 出願 및 登錄事務의 處理는 다른 法令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規程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3條 (書類 등의 接受) ① 出願에 관한 書類·模型 및 見本(이하 書類 등이라 한다)은 出願課에서 審査進行中에 있는 出願에 관한 意見書 및 補正書 등 中間書類 등은 調整課에서 각각 接受한다.

② 登錄에 관한 書類와 商標權存續期間 更新登錄出願에 관한 書類는 登錄課에서 接受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書類 등이 郵便에 의한 것은 總務課에서 接受하되 公休日 또는 日課時間 후에 도착된 것은 一宿直職員이 接受한다.

第4條 (接受節次) ① 第3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程에 의하여 書類 등을 接受하였을 때에는 즉시 接受人을 捺印하고 接受部에 接受年月日, 提出人의 姓名 또는 名稱, 件名 및 納付한 料金등을 記載한다.

② 第3條 第3項의 規程에 의하여 總務課에서 郵便으로 接受한 書類 등은 封套와 書類에 接受印을 捺印하고 接受部에 接受年月日, 提出人의 姓名 또는 名稱 및 件名을 記載한 후 該當課에 引繼한다.

③ 第3條 第3項의 規程에 의하여 日課後 日宿直者가 接受한 書類 등은 當直日誌에 記載하여 다음 勤務日에 總務課에 引繼하고 總務課는 前項의 節次에 의하여 該當課에 引繼한다.

第5條 (郵便에 의한 接受書類의 特例) 特許法施行令 第4條, 實用新案法施行令 第4條, 意匠法施行令 第5條 및 商標法施行令 第8條의 規程에 의하여 提出된 書類 등이 特許廳에 도달한 날에 그 効力이 發生하는 경우 한 봉투에 여러가지 書類가 있을 때에는 각각 郵便物消印日字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第6條 (書類의 發送) 出願課에서 行한 方式審査에 관한 書類, 拒絕査定書, 登錄査定書, 無効處分通知書 등은 出願課에서, 審査進行中에 있는 出願에 관한 書類 등은 調整課에서, 商標權存續期間 更新登錄

出願의 方式審査에 관한 書類 및 이의 登錄査定書·拒絕査定書·無効處分通知書 등과 기타 登錄에 관한 書類는 登錄課에서 각각 發送한다.

第7條 (方式審査) 第3條의 規程에 의하여 接受되는 書類가 關係規程에서 정하는 方式에 適合한지의 與否에 대하여는 각각 當該書類의 接受課에서 審査한다.

第8條 (特許料, 手數料 및 登錄稅, 領收證의 接受印捺印) 書類를 接受할 때에는 特許料, 手數料 및 登錄稅 領收證에 반드시 接受日을 捺印하여야 한다.

第9條 (書類에 添付한 印紙의 消印) 出願 또는 登錄에 관한 書類 등에 添付한 印紙는 當該書類를 受理할 때에 消印 또는 穿孔하여야 한다.

第10條 (出願番號通知 등의 節次) ① 受理된 出願書는 接受順位에 따라 出願番號를 賦與하고 이를 出願人 또는 代理人에게 通知한 後 出願台帳에 出願番號 出願人姓名 또는 名稱, 代理人의 表示와 提出年月日을 記載한다.

② 出願番號는 年度別 一連番號로 한다.

第11條 (布袋의 作成) 受理된 出願書에 대하여는 出願課 또는 登錄課에서 즉시 布袋를 作成하여 調整課에 引繼한다. 단, 方式이 完備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布袋에 그 表示를 하고 第15條에 의한 補正書提出時까지 出願課 또는 登錄課에서 保管한다.

第12條 (카드備置) 調整課는 出願에 관한 主要事項과 處理 및 進行狀況을 그때마다 카드에 記載하여 出願의 處理狀況을 明確히하여야 한다.

第13條 (出願書의 分類移送) 調整課는 出願課 또는 登錄課로부터 引受한 出願書類를 分類審査하여 該當類를 出願布袋에 表示한 後 審査接受簿 및 카드에 記載하고 分類審査目標와 함께 該當審査局에 引繼한다

第14條 (方式不備書類 및 再分類) ① 審査官이 出願書類 및 中間書類를 配付받았을 때 또는 審査進行中 重大한 方式上的 補正을 要하는 事項을 發見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調整課를 경유하여 該當課에 返送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程에 의하여 書類가 해당과에 返送되었을 경우 該當課는 이를 檢査하여 즉시 그 補正을 命하여야 한다.

③審査官은 第13條의 規程에 의하여 引受한 書類를 즉시 檢査하여 分類가 適合치 아니하다고 認定되었을 때에는 즉시 調整課에 再分類를 要請하여야 한다

第15條 (補正書 등의 處理) ①出願課 또는 登錄課는 出願書에 대하여 補正 기타의 指示에 관한 命을 발한 경우 指定期間內에 補正書가 提出되었을 때에는 이를 審査하고 해당한 것에 한하여 出願書類를 調整課에 引繼한다.

②調整課는 前項의 規程에 의한 書類를 받았을 때에는 接受簿 및 카드에 기재한 후 해당 審査局에 引繼한다.

③審査局에서 審査進行中의 出願에 관하여 補正 기타의 命을 발한 경우에는 施行할 文書를 作成하여 調整課로 移送하여야 하며 調整課는 이를 迅速히 發送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規程에 의한 補正 其他 命에 대하여 指定期間內에 補正書 등이 提出되었을 때에는 方式이 適當한 것에 한하여 第2項의 節次를 거쳐 해당 審査局에 引계한다.

第16條 (出願審査處理台帳) 審査機關은 出願審査 處理台帳을 作成하여 出願의 審査結果를 明白히 記錄하여야 한다.

第17條 (公告決定書의 處理) 調整課로 移送되어온 出願公告決定書는 發送部 및 카드에 記載한 後 出願人 또는 代理人에게 發送하고 附箋紙 및 出願書의 副本은 公報發刊課에 移送하여 公告 依頼하여야 한다.

第18條 (異議申請書 및 意見書接受) ①調整課는 公告中에 있는 出願에 대하여 異議申請書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檢査確認後 接受簿 및 카드에 記載하고 해당 審査局에 引繼한다.

②調整課는 拒絕理由通知에 대한 意見書가 提出되었을 때에는 接受簿와 카드에 記載한 後 該當審査局에 引繼한다.

第19條 (特許法 第28條에 의한 處分) 出願課, 登錄課 또는 審査官은 特許法第28條第3項의 規程에 의한 處分の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즉시 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20條 (模型 또는 見本の 提出 및 處理) ①調整課는 審査資料로서 模型 및 見本提出이 있을 때에는 接受簿 및 카드에 記載하고 該當審査局에 引繼한다.

②各 審査局은 調整課로부터 引受받은 模型 및 見本은 目錄을 作成하여 保管하고 審査가 끝난 것에 대하여는 提出人에게 30日間の 期間을 정하여 受領할 것을 通知하여야 한다.

③提出人이 前項의 指定期間內에 模型·見本등을 受領하지 아니할 때에는 帳簿에 「處分」의 表示를 하고 處分할 수 있다.

第21條 (査定 또는 其他 處分을 한 書類의 管理) ①調整課는 審査局으로부터 査定 또는 기타 處分을 한 出願書類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發送簿 및 카드에 記載한 後 出願課에 引繼한다. 다만, 商標權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에 대한 것은 登錄課에 引繼한다.

②前項의 規程에 의하여 出願書類를 引繼받은 出願課는 台帳整理를 畢한 後 登錄査定된 出願書類는 登錄課에 나머지 것은 資料調査課에 각각 引繼한다.

③出願課 또는 登錄課는 拒絕査定 및 登錄査定 後 30日 以內에 取下書提出이 있을 때에는 이를 取下處分하고 該當審査局 및 出願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22條 (査定破棄還送審決을 받은 出願書類) 調整課는 特許法第135條의 規程에 의하여 出願書類가 移送되어 왔을 때에는 카드를 作成, 그 要旨를 記載하고 出願課 또는 登錄課에 整理를 필하게 한후 該當審査局에 引繼한다.

第23條 (審査官의 審判請求) 審査官이 審判을 請求할 경우에는 그 要旨를 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24條 (料金不納으로 인한 出願拋棄 및 登錄權의 消滅公告) ①登錄課는 登錄料不納으로 인하여 出願을 拋棄하는 것으로 處理할 경우에는 納付 期間經過 後 그 節次를 取하고 이를 關係審査局에 通知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節次를 마친 出願拋棄의 書類는 資料調査課에 移送한다.

③登錄課는 特許料 또는 登錄料不納으로 인하여 特許權 또는 登錄權이 消滅되었을 때에는 消滅登錄을 필하고 이 事實을 公報發刊課에 公告 依頼하여야 한다.

第25條 (登錄節次) 登錄課에서 登錄에 관한 書類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登錄 또는 却下의 節次를 취하여야 한다.

第26條 (特許料 등의 過誤納通知) 出願人 또는 登錄權者가 納付한 料금이 過誤納되었을 때에는 當該書類의 接受課에서 納付者와 收入代替出納公務員에게 過誤納된 事項을 지체없이 通報하여야 한다.

第27條 (登錄書類의 整理) 登錄課는 登錄査定分割許可審判의 審決, 抗告審判의 審決 또는 再審請求에 대한 審決에 의하여 登錄을 할 때에는 그 要旨와 特許 또는 登錄番號 및 特許 또는 登錄日字를 布袋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28條 (豫告登錄後의 變動事項通知) 登錄課는 特許登錄令第3條, 實用新案登錄令第4條, 意匠登錄令第5

條 및 商標登錄令第11條의 規程에 의하여 豫告登錄이 되어있는 權利에 대하여 權利의 移轉, 變更, 消滅 및 表示變更登錄을 할 때에는 그 趣旨를 關係課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29條 (登錄原簿 및 登錄布袋의 取扱特例) ①登錄原簿 및 登錄布袋는 특히 注意하여 取扱하여야 하며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登錄課의에 返出하여서는 안된다.

②登錄査定布袋 또는 登錄布袋는 審判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該當課에 貸出할 수 있다.

③前項의 規程에 의하여 貸出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理由를 記載한 布袋貸出依頼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④布袋를 引繼引受할 때에는 內容物을 確認하고 引繼引受欄에 반드시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30條 (書類의 處理狀況報告) ①各主務課長은 每月 10일까지 前月에 處理한 書類 등의 實態를 調査하여 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各審査局은 審査官別 審査進行狀況을 每月 10일까지 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31條 (完結書類의 保存) 完結된 書類中 拒絶査定 無効處分 및 拋棄된 出願書類는 資料調査課에서, 登錄書類는 登錄課에서 各各 保存한다.

附 則

이 規程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2項·第6條 및 第21條第1項(但書의 商標權存續期間更新出願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는 1977年 1月 1일부터 適用된 것으로 본다.

—10面에서 계속—

(3) 출원명세서의 작성은 한글로 가로로 띄어 쓰되 打字함을 원칙으로 하며 1面の 字數는 統一打字機의 字版을 基準으로 20行 以內로 하여야 한다.

(4) 출원명세서의 各面에는 左側 上部로부터 線밖에 每 5行마다 그 該當行數를 表示하고, 下端線 밑 中央에 그 面數를 一連番號로 記入하여야 한다. 다만 面數의 表示는 도면은 包含하되 申請書, 讓渡證, 委任狀 및 其他 參考資料는 除外한다.

도면의 작성요령은 審査準則 28.01A 에서……

(1) 用紙는 가로 190mm, 세로 268mm의 크기의 トレ싱 페이퍼 또는 トレ싱 크로스(黃色 또는 赤色の 것

은 제외)를 세워서 사용한다.

(2) 용지의 좌우 및 하단에 각각 적어도 20mm, 상단은 35mm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3) 同一한 도면을 2通이상 提出할 때에는 위의 トレ싱紙圖와 그 靑寫眞으로 한다.

(4) 도면을 첨부할 때에는 명세서의 뒤에 綴한다.

(5) 도면의 각면 우하단에는 출원인(대리인)의 성명(명칭)을 기재하고 捺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細部事項으로 발명의 명칭의 記載方法 발명의 구성 및 작용효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관한 具體的인 사항은 審査準則에서 그 事例를 들어 明示하고 있다. ♪

감 사 문

본회가 발명사상 앙양 및 보급을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77년도 제3회 초·중학생작문현상모집에 응모하여 주신 전국 국민학교 및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지도선생님과 응모 어린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올해에는 예년보다 많은 작품이 응모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본회 사업취지가 널리 인식되고 있

는 것으로 여겨져 더욱 기쁨마음 가득합니다.

지난 9월말로 마감한 응모작품은 총 675건으로서 10월말까지 심사위원들에 의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초에 입선작 발표에 이어 11월말쯤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임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한국특허협회 회장 주 요 한

庶政刷新 따로 없다 말은 바 完遂하자!